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 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비밀유지 의무 위반(법 제52조의6)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2.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제5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위반행위 : ①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②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100만원의 과태료

## 3. 비밀유지 위반(법 제63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4. 사업주의 서류 미보존(법 제64조 제1항)

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 나. 조치기준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100만원의 과태료

#### 5.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보존 의무 위반(법 제64조 제2항)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의 과태료

#### 6.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 제3항)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100만원의 과태료